**현장실습 업무제휴 협약서**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현장실습 실습기관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, 성균관대학교 Co-op위원회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및 성균관대학교 현장실습생(이하 “병” 이라 한다)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실습기관의 의무)** “갑”은 현장실습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1.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“을”에게 제출한다.

2. “병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부서에 배치하고, “병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기회를 제공한다.

3.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“병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.

4. “을”의 현장실습 중간 점검 및 “병”에 대한 지도에 협력한다.

5. 실습시간은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6. “갑”은 실습종료 후 “을”에게 “을”이 정한 서식에 의거하여 “병”에 대한 현장실습 평가결과 및 출근상황을 통보한다.

**제3조(실습생의 의무)** “병”은 현장실습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은 실습에 앞서 사전교육(산업재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)을 이수하여야 한다.

2. 학생은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내규를 준수하고 기밀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아니한다.

3. 학생은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고,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후 7일이내에 Co-op위원회 또는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현장실습기간)** 현장실습 기간은 20 . . . ~ 20 . . .으로 한다.

**제5조 (현장실습비등 지원사항)** ①“갑”은 “병”에게 현장실습비 총 원을 지원한다.

②“갑”은 “갑”의 내규에 따라“병”에게 식비, 교통비,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.

**제6조 (산재보험)** ①“갑”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“병”의 보건⋅위생과 아울러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“을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 단서의 경우 “을”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.

**제7조(기타)**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약의 효력발생)** ①“갑”과 “을”사이의 본 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현장실습이 종료한 때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“갑”과“을”에 대한 “병”의 협약 효력은 “병”이 본 협약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, “병”의 실습이 종료함으로써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“병”의 동의는 “을”이 운영하는 현장실습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자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,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“갑”(기업, 기관, 단체) | “을”(대학) |
| ∙주 소 : | ∙주 소 :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-2 |
| ∙회사명 : | ∙대학명 : 성균관대학교 |
| ∙기관장 :  (부서장) (인) | ∙기관장 : Co-op위원회 위원장 (인) |